#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8

발의연월일: 2021. 3. 12.

발 의 자:진성준·강병원·강준현

김병욱 · 김정호 · 박상혁

소병훈 · 위성곤 · 이수진

전혜숙 • 진선미 • 최혜영

허 영·홍성국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 전반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이 업무상 기업 관련 정보를 다룸에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분야의 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14조의15,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전무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4조의16 신설).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자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본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신고 받는 경우에는 그 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 제3조(등록의무자)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 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 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 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 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 서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u>법률」 제2</u>조제3호 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자가 제1 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3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각 호에 따른 등록의무자 로 본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 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 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 되는 부서의 공직자(「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계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 다)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 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 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 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 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신고 받는 경우에는 그 방안을 관할 공직자운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